

의안번호	267
------	-----

충청남도도세조례개정조례안

제안자	충청남도지사		제안일자	1998. 1. 30
위원회심사	소관위원회	내무위원회	회부일자	1998. 2. 2
	의결일자	1998. 2. 16	심사결과	원안가결
본회의심사	회차	제 118 회 임시회 2차 본회의		
	의결일자	1998. 2. 23	심의결과	원안가결
이송일자	1998. 2. 25		이송기관	충청남도지사
공시일자	1998. 3. 17		공시번호	2699

□ 개정이유

- '97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, 도세의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과세객체, 세율,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, 기타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와 수정신고 납부방법등 규정
-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 부심사제도의 운영사항등 신설
-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기한을 6개월로 하고 신청서 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 토록 규정
-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규정된 취득세·등록세율을 조례로써 적용세율명시
- 앞으로 경륜장, 경정장, 경마장이나 장외 발매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아 납세의 무자와 세율 등을 조례에 명시
- 관련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리
(건설업법 →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계 → 기계장비)